



사회맞춤형학과 운영 지침

규정번호	3-3-28		
제정일자	2017.2.20.		
개정일자			
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9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의 학과가 사회맞춤형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① “사회맞춤형교육”이라 함은 산업체의 실제 인력채용 수요조사를 근거로 교육생 선발,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, 채용 약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실시하고, 산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협약과정을 말한다.

② “사회맞춤형교육과정”이라 함은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말한다.

③ “사회맞춤형학과”라 함은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해 기준에 따라 선발한 학생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하고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.

④ “사회맞춤형교과”라 함은 학과의 다른 교육과정에는 없고 사회맞춤형교육과정에서만 편성된 과목으로 구성된 분과를 말한다.

제3조(사회맞춤형학과운영위원회) ① 사회맞춤형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운영은 교학처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을 관련 전임교원과 사회맞춤형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관계자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위원 중 1/3 이상은 산업체 관계자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맞춤형교육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2. 사회맞춤형학과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
3.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회맞춤형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사회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운영위원회) ① 학과는 사회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운영위원회(이하 “교육과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진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과정위원회는 사회맞춤형 협약업체별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과별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인재상 및 학생선발기준 등 인재공동선발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관한 사항

3.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
4. 사회맞춤형교육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5. 사회맞춤형교과 운영에 필요한 실습환경 구축 및 기자재 도입에 관한 사항
6.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

제5조(사회맞춤형학과의 신청) 사회맞춤형교육 시행을 희망하는 학과의 학과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『사회맞춤형교육 계획 승인 신청서』(별지 서식 1)와 관련 서류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회맞춤형학과의 승인) ① 운영위원회가 학과의 사회맞춤형교육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이 재가함으로 승인을 확정한다.

② 고용계약의 유지가능성을 감안하여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1개 항목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, 참여기업 중 1개라도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회맞춤형학과를 승인하지 아니한다.

1. 협약 산업체가 1개인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산업체, 복수 산업체와 협약하는 경우는 참여기업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산업체
2. 신용등급 B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산업체
3. 정부인증, 지자체 인증 또는 우수기업(월드클래스 300, 명장기업, Best HRD 기업, 강소기업, 혁신기업 등)으로 인정받은 기업
4. 기타 업종 특성상 상시 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기업 중 본사, 협회, 지자체 등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이 인증하여 사회맞춤형 교육 및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사회맞춤형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적격여부로 판단한 산업체

③ 사회맞춤형학과 승인의 최소채용약정인원은 20명으로 하고 채용약정 인원의 1.5배 까지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교육과정 운영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 참여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충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사회맞춤형학과의 운영기간 및 취소) ① 사회맞춤형학과의 설치·운영기간은 사회맞춤형학과 설치학년도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협약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교육생의 특별한 사유 없이 또는 채용협약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률 30% 미만인 사회맞춤형학과에 대하여 총장의 허락을 얻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사회맞춤형학과 참여기업 변경) ① 사회맞춤형학과 참여기업 변경을 희망하는 학과의 학과장은 참여기업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, 『사회맞춤형교육 참여기업변경 신청서』(별지 서식 2)와 관련 서류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위원회가 고용계약의 변경사유, 참여기업의 고용계약유지가능성, 참여기업의 직무연관성,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판단하여 변경신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이 재가함으로 변경을 승인한다.

제9조(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) ①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은 본 대학 “NCS 기반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지침”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편 시기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.

③ 사회맞춤형교육은 학과단위 및 타 학과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사회맞춤형교육의 운영) ① 사회맞춤형교육은 설치한 학과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며, 학과장이 운영 책임자가 된다. 단, 복수의 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 학과를 선정하고, 그 학과의 학과장이 운영 책임자가 된다.

② 교육과정위원회는 사회맞춤형교육 참여 학생을 제4조 제3항 제1호의 학생선발기준에 따라 사회맞춤형교육을 시작하는 학기 개시일 이전에 선발하고, 학과장은 그 명단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③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명시한 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자를 선정하고, 학과장은 그 명단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④ 전문화되고 특화된 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사회맞춤형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생선발, 교육과정개발, 교재개발, 교육과정 운영 등은 학과와 협약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한다.

제11조(전담교수) ① 학과는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해 학과의 전임교수 중 전담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② 전담교수는 학과장과 공동으로 학과의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, 평가체제 구축 등 사회맞춤형교육 운영을 주관한다.

제12조(산업체멘토) ① 학과는 사회맞춤형교육을 위해 협약업체별로 1명의 직원을 추천받아 산업체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② 산업체멘토는 학생의 학습지원, 경력개발지원, 프로젝트 수행지도 등 사회맞춤형교육 운영을 지원한다.

제13조(학사관리)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수업 및 성적 등의 학사 관리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과 관련한 활동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서식 3]

대학-산업체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협약서

제1조 (협약의 목적) 000(이하 “산업체” 라 칭함)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칭함)는 사회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의 공동양성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2조 (협약의 내용) 산업체와 대학은 각각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.

- ① **(학과구성)**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과 산업체는 20__학년도부터 사회맞춤형학과 _____반을 개설·운영한다.
- ② **(채용약정)** 산업체는 위 제1항 사회맞춤형학과를 적정한 기준으로 이수한 학 학생____명에 대해 채용을 약정하며, 해당 기준은 대학과 산업체가 별도로 정한다.
- ③ **(공동선발)** 위 제1항에 따라 사회맞춤형반에 참여하는 학생은 공동 선발한다.
- ④ **(교육과정)** 위 제1항을 위한 교육과정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하고 편성하여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.
- ⑤ **(교원참여)**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체는 해당 산업체 전문가를 해당 사회맞춤형학과의 교육활동에 참여시키는데 협조한다.
- ⑥ **(현장실습)** 산업체는 참여학생의 현장실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조하며,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하여 산업체는 소정의 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은 참여학생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다.

제3조 (상호협력) 대학과 산업체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, 시설인프라, 품질관리, 채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제4조 (기타) 위 항에서 명기하지 않은 세부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대학과 산업체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20 . . .

(대학)	동양미래대학교	(산업체)	0 0 0
	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45		(산업체 주소)
총 장	0 0 0 (인)	(직 책)	0 0 0 (인)

[별지 서식 4]

20__학년도 사회맞춤형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위원회

학과명		학과장	(인)
-----	--	-----	-----

구분	소속	직위	성명	관련 직무
위원장				
전담교수				
내부 위원				
		명		
외부 위원				
		명		
총	명			

※ 외부 위원인 경우 관련 직무명을 기재하시기 바람 (사회맞춤형 협약업체별 1인 이상 포함해야 함)

[별지 서식 6]

사회맞춤형학과 협약산업체(기관) 현황

협약대학		유형	단일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컨소시엄 <input type="checkbox"/>
사회맞춤형 학과명		약정인원	
업체명		대표자	
사업자 등록번호		연락처	대표자 : 실무자 :
업 종		종사원수	명
주생산품		회사규모	<i>연 매출액 00억원</i>
주 소	(-)		
홈페이지		e-mail	
전화번호		FAX번호	
신용등급			
인증현황	중소기업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자원통상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월드클래스300 <input type="checkbox"/> 명장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Best HRD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강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_____		

※ 첨부서류 : 인증 현황 증빙서류 (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